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의뢰인 :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보좌관 최원학

건명 : 박철호 소유물건 (2025타경56203)

번호 : 삼창제 F20252-06027 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 (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삼창감정평가법인
Samchang Appraisal Co., Lt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2

광고빌딩2층

TEL.031-206-8700 / FAX.031-206-8701~2



(부동산)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김 각 수 (인)

(주) 삼창 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한 승 훈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일억팔백만원정 (₩108,000,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보좌관 최원학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경매8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박철호 (2025타경56203)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6. 12		2025. 06. 12	2025. 06. 12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별	면적(㎡)또는 수량	종별	면적(㎡)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108,000,000
	합계					₩108,000,000
	이	하	여	백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대상물건 개요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귀인타운)' 제2층 제201호로서, 수원지방법원 경매8계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나. 대상물건은 토지의 소유권대지권과 건물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구분건물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출하는 원가법의 적용은 적절하지 아니함. 또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시산가액을 산출하기에는 유사물건의 임대료 수준과 환원이율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여, 수익환원법의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아니함. 따라서, 주된 감정평가방법 외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여,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의 적용은 생략하였음.
- 다. 위 규정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4. 그 밖의 사항

- 가.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출입구 표시부분으로 기준하였음.
- 나. 대상물건의 내부구조도 및 이용상태 등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탐문조사, 외부관찰 및 표준적 이용상황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람.

5. 기준시점 등

- 가.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하여 2025년 6월 12일로 함.
- 나. 실지조사(2025년 6월 12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거래가격수준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대상물건의 확정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8-1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81번길 14-3)							
건물명 및 층·호수	(통칭:귀인타운) 제2층 제201호							
건물의 개 황	지목	용도지역	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대	2종일주	291.1		579.56	-/지상5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단지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2017.01.23	동수	세대수/호수	
설비현황	난방설비	냉방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기타설비
	-	-	○	-	○	○	○	-

일련번호	동/층/호수	면적 (㎡)			소유권 대지권 (㎡)	용도
		전유	공용	합계		
가)	2/201	21.45	5.39	26.84	13.48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합 계		21.45	5.39	26.84	13.4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가. 비교사례의 선정

1) 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원)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①	권선동 000-00	4/000	17.36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법원경매	2025.02.17	84,000,000
						2015.05.29	(약 4,840,000)
②	권선동 0000-00	2/000	32.16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법원경매	2025.03.31	163,000,000
						2017.09.28	(약 5,070,000)

2)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권선동 000-00	4/000	24.3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2024.09.27	124,9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7.01.23	(약 5,140,000)	
㉡	권선동 000-00	2/000	22.56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2024.03.07	105,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7.01.23	(약 4,650,000)	
㉢	권선동 000-0	2/000	35.25	다세대주택	2025.02.04	180,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7.03.17	(약 5,11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수준 및 경매낙찰가율

■ 거래가격수준

용도	거래가격수준	조사처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4,600,000원/㎡~5,000,000원/㎡ 수준	인근 부동산

■ 경매낙찰가율(1년간 평균낙찰가율)

(출처: 인포케어, www.infocare.co.kr)

지역통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구분	낙찰가율 (%)	낙찰률 평균 (%)	낙찰건수 (건)	낙찰가율 (%)	낙찰률 평균 (%)	낙찰건수 (건)	낙찰가율 (%)	낙찰률 평균 (%)	낙찰건수 (건)
집합건물/다세대	69.23	69.93	3051	71.63	71.17	149	70.92	72.07	47

4) 비교사례의 선정

감정평가대상 부동산과 위치, 층별 및 위치별 효용도 등에서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①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동/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 (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①	권선동 000-00	4/000	24.3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2024.09.27	124,9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7.01.23	(약 5,14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0).

다. 시점수정

■ 일련번호 가)/비교사례 ㉠

대상물건은 구분건물(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로서, 한국부동산원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경기 경부2권(연립다세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1) 시점수정치 산출 (2024.09.27~2025.06.12)

$$\frac{2025년\ 04월}{2024년\ 08월} = \frac{100.0}{100.1} \approx 0.99900$$

※ 기준시점 : 2025.06.12, 2025년 05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5년 04월 지수를 적용 함.

※ 거래시점 : 2024.09.27, 2024년 08월 지수를 적용 함.

2) 시점수정치의 결정

상기의 지수로 결정하였음(0.999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가치형성요인비교

■ 주거용

조 건	항 목	비교 사례㉠	일련번호 가)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 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1.00	1.00	유사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 식/계단식) 등	1.00	1.00	유사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0	0.98	대상물건이 층별효용 등에서 열세함.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유사함.
개 별 요 인 비 교 치		1.000	0.980	-

마. 산정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사례단가 (원/전유㎡)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전유면적㎡)
가)	5,140,000	1.000	0.99900	0.980	5,032,16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동/층/호수	전유면적 (㎡)	소유권대지권 (㎡)	전유면적당 단가 (원/㎡)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가)	2/201	21.45	13.48	5,032,163	107,939,896	108,000,000
합 계		21.45	13.48	-	-	108,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고, 인근의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와 같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끝.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구 조	면적 (㎡)		감정평가액 (원)	비고	
					공부	사정			
1.	1동의 건물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81번길 14-3	표시 958-11 (통칭: 귀인타운)	공동주택 (도시형생 활주택-단 지형다세대 주택,원룸 형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지붕 5층					
					1층	27.24			
					2층	147.6			
					3층	161.4			
					4층	133.92			
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201호	21.45	21.45	108,000,000	비준가액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지권의종류: 대지권의비율:	토지의 958-11	표시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1.1	291.1			
					1. 소유권	13.48			
					1.	-----	13.48		
						291.1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54,000,000			
					건 물:	54,000,000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합 계			이 하	여 백		₩108,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권선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지상5층 건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석재 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이용상황 및 임대상황'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권선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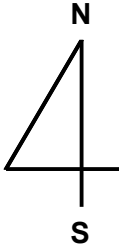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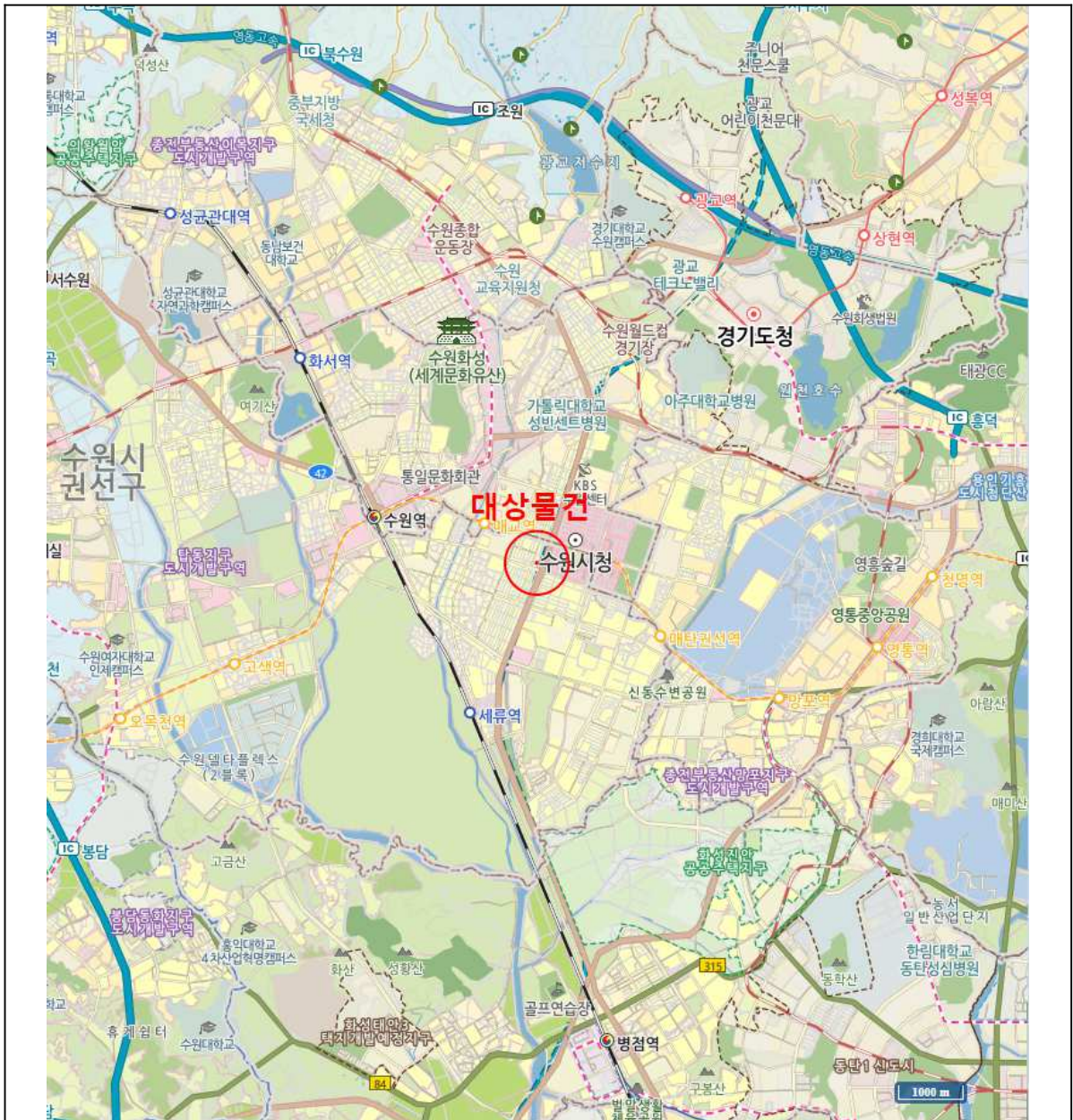
임대미상임.

광역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8- 11
(통칭:귀인타운)
제2층 제201호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소재 건물 전경 (북동측 촬영)]



[대상물건 전경 (남동측 촬영)]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현관문 전경]



[대상물건 현관문 전경]